

2025년 포웰컨트리클럽 고정단체 이용약관 및 관리규정

제 1조
목적

1. 본 규정은 4WELL CC 고정단체의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등록 단체
팀 신청 및 구성

1. 고정단체팀의 신청 자격은 3팀 이상 되어야 한다.
2. 고정단체팀의 이용기간은 당해 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3. 월 1회, 연 10회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고정단체팀은 예약, 취소, 위약, 운영규정 및 이용약관 준수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고정단체팀의 신청 및 구성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고정단체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 고정단체팀 신청 시, 팀원(명단)을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팀원(명단)의 내장을 필수로 한다.

제 3조
예약, 취소, 위약
운영 관리

1. 변경/취소/휴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전까지 총무(담당자)가 예약실로 유선 접수하여야 한다. (프런트 및 다른 채널 접수는 불가하다.)
2. 신청한 계약 팀수 운영은 필수이며, 휴회는 연 2회까지 가능하며 2회 초과시 자동 탈회된다.
※필수 이용 : 1~2월 중 1회 이용 / 7~8월 중 1회 이용 필수
※휴회(년2회) : 1~2월 중 1회 휴회 / 7~8월 중 1회 휴회 필수
3. 2부 고정단체에 한해 부대업장 3만원 이상 이용하여야 하며, 상하반기 평가 후 미 달성 시 배정이 불가하다.
4. 고정단체 약정요금 외 쿠폰 및 기타 할인 중복 적용 불가하다.
5. 전체 취소(휴회)는 15일 전 14시까지 하여야 한다.

■취소 규정

| 위약내용 | 조치사항 | 주증 | 주말 |
|-------------------------------|---------------------------|----------|----------|
| 당일미내장 | 정상가 그린피(3인) 100% | 484,000원 | 574,000원 |
| 취소가능일 이후 취소 시 (전체취소 15일 전) | 14일~5일전 : 정상가 그린피(3인) 50% | 242,000원 | 287,000원 |
| | 4일~1일전 : 정상가 그린피(3인) 80% | 387,000원 | 459,000원 |
| 위약금 미정산 | 자동탈회 및 회장/총무 예약 및 내장 영구정지 | | |

제 3조
예약, 취소, 위약
운영 관리

6. 공휴일 및 당 클럽의 임시 휴장, 특별한 사정(행사, 대회 및 기타) 등으로 고정단체팀의 예약일이 중복될 경우, 일자 변동 없이 자동 취소 된다.
단, 사전 협의를 통해 주중에 한해 조정 가능하며 요금이 변동될 수 있다.
 7. 시간 및 팀 수 배정은 경기일 3~4주전, 담당자에게 문자로 발송 한다.
 8. 등록된 일자, 시간, 코스 등의 변경은 불가하다.
 9. 조 편성표는 경기 5일전까지 카카오톡 또는 팩스로 등록한다.
(카카오채널 : 포웰컨트리클럽 / fax : 055-340-9021)
 10. 일조·일몰시간 및 회사 사정에 따라 Tee-off 시간 변경 또는 휴장 시 예약을 제한하거나 예약 시간대를 변경 할 수 있다.
 11. 40분전까지 내장 등록을 완료하고, 10분 전까지 티잉 에어리어(Teeing area)에 대기하여야 한다.
 12. 고정단체팀 등록 신청서에 제출한 팀원(명단) 내장이 필수이며, 비회원 명단에 포웰CC 회원이 내장할 수 없다.
 13. 클럽 이용 시에는 로컬 룰 및 운영규정, 골프에티켓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단체 팀 등록 취소 및 예약·내장제한,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 각종 사회이슈(사회적 거리두기 등)로 인해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15. 고정단체 회장 총무 당일 변경은 불가하다.
 16. 고정단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담당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팀의 예약, 취소 변경 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7. 클럽의 프로샵과 레스토랑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시상품 및 음식물은 일체 반입할 수 없다.
1.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당클럽 골프장 이용 약관에 따른다.
1. 본 규정은 고정단체 등록 신청서 제출시부터 시행한다.
2. 본 이용약관 및 관리규정 외 이견은 포웰컨트리클럽 이용약관으로 갈음한다.

제 4조
기타

제 5조
부칙

이 수칙은 고정단체 등록 신청서 제출시부터 시행한다.